





LPG 충전업 관련 질의·회신


산업자원부


LPG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산자부가 회신한 내용을 게재한다.

 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한 때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때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서 판매소의 영업시간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판매소는 무조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의 야간(심야)의 공급요구에 불응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12. 8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업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심야시간 공급요구에 대해 다른 사유가 아닌 단지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공급을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허가관청에서는 공급거절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스산업과 12. 11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2호에 보면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7인 미만에는 어떠한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11. 28

 현행규정참고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는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인들의 LPG연료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LPG(부탄)를 비롯한 휘발유, 경유 등 모든 수송연료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동차연료 중 LPG는 휘발유, 경유와 대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동차연료 수요자들에게 선호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에너지원별 수급상황 연료사용자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LPG연료사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사업자와 소외계층 등에게 사회공익 차원의 혜택을 주기위해 저렴

한 자동차연료인 LPG사용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차량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왔음. (수요자들의 요구로 82년 사업용 승용차에 대해 LPG사용을 전면 허용한 이후 LPG연료사용 수혜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그 결과 LPG차량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수요범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이 급격히 증가(99년 60%, 01년 55%)하여 에너지 수급안정과 수송연료간 상대가격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지난 2000년 1차 에너지가격세계제개편이 이루어져 휘발유 : 경유 : LPG의 상대 가격비율을 100 : 75 : 60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01년 7월부터 6년간 단계별로 특별소비세를 인상해 왔으나, 경유차 엔진 기술의 발전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국제기준치에 도달하게 되어 2005년부터 경유자동차가 시판될 계획에 따라 에너지 세계개편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에는 다시 제2차 에너지가격세계제개편이 이루어져 휘발유 : 경유 : LPG의 상대 가격비율이 100 : 85 : 50으로 조정되었고 현재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음.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차량용 연료시장의 변화와 에너지원별 수급상황, 연료사용자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향후 에너지세계제개편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PG연료 사용 제한의 완화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가스산업과 12. 2

참고*

- '8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엘피지 사용 전면 확대
- '89년 :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자동차에 사용 확대
- '93년 : 소형 화물차에 엘피지 사용 확대
- '93년 :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허용
- '95년 :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전면 허용
- '97년 :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보호자를 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 '98년 : 장애인의 경우 배기량 제한을 없애고, 세대당 1대로 확대
- '03년 : 국가유공자 등의 상속받은 보호자 지속 보유가능 허용
- '06년 : 공공기관 승용자동차 허용(입법 예고)



LPG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원룸 거주자로 체적거래를 하고 있으며, 11월 가스가격이 2,678원이었는데 12월 현재 2,878원으로 한달 새 무려 200원이나 인상되었음.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인상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LPG가격이 계속 상승하는지 답변요망. 12. 6



LPG가격에 대하여는, 정부의 최고가격고시제가 폐지되고 2001년 1월 1일부터 가격자유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충전소 및 판매소 가격이 지역별, 업소별로 다르게 판매되고 있음.

그리고 정유사 및 수입사 가격, 각 지역별 판매소 및 충전소 가격 등이 매 주 단위로 조사되어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petronet.co.kr)에 공시되고 있으니 가격변동내역은 동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LPG도매가격은 수입사(E1,SK가스)가 매월1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05.LPG 11월 가격과 12월가격은 LPG국제가격이 대폭상승(110\$/ton)하여 도매가격이 129원/kg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약 10%이상 상승하였음.(프로판세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LPG자동차용 부탄 세금은 7월에 하향조정 된 이후 변동이 없음)

산업자원부에서는 장관 중동순방시 LPG의 저가공급을 사우디 정부에 요청하였고, 유통단계의 축소를 위해 배송센터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격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가스산업과 12. 11